국가연구개발혁신법 협약의 체결 · 변경 · 해약 안내

○ **(협약체결)** 해당 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며, **최초 과제 선정 단계에서만 협약을 체결**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※ 연차협약 · 평가 · 정산은 원칙으로 폐지

○ **(중요한 협약의 변경)**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

- 연구기관의 추가 · 변경, 연구책임자, 연구개발과제의 목표,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,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등

○ **(경미한 협약의 변경)** **통보만**으로 협약 변경

-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이나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 결과에 따른 변경은 일방의 통보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

※ 추진방법, 연구자(연구책임자 제외), 연구비 사용의 개괄적 계획 변경 (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 제외), 그밖에 별도로 협약으로 정한 경우 등

○ **(특별평가)** 과제를 **중단 · 해약**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, 해당사유의 **정당성 ·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**

※ 부정행위 발생,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확정, 과제 목표의 조기 달성, 환경 변화,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의 협약 등 의무 위반 등